

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

◎ 보건사회부고시 제87-11호

식품위생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
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.

1987. 3. 16

보건사회부 장관

식품등의 규격및 기준

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제3. 식품일반에 대한 규격 및 기준
중 7. 유·유제품, 식육 및 식육제품의 성분 및 보존 등에 관한 일
반규격 및 기준의 나. 유당분해우유 다음에 조제우유, 버터유분말을 추
가하며, 제4. 식품별규격 및 기준중 130. 조제우유 다음에 버터유분말을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1. 버터유분말

버터유분말이라함은 버터제조시에 지방을 제거하고 남은 버터
유를 건조분말처리한 것을 말한다.

가. 규 격

- (1) 성 상 : 고유의 색깔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·이취가 없어야 한다.
- (2) 수 분(%) : 5.0이하
- (3) 유고형분(%) : 95.0이상
- (4) 세 균 수 : 1g당 40,000이하
- (5) 대장균군 : 음성이어야 한다.

나. 시험방법

80. 전지분유에 따라 시험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